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23】

2014. 10. 20.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목 차

I. 베트남 금융산업 개요	1
II. 금융산업 감독 체계	7
III.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9
IV.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18
V.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21

작 성: 책임조사역 임영석 (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 사 역 유재준 (6255-5705)
jjyu@koreaexim.go.kr

확 인: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 베트남 금융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한-베트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으로 동 산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베트남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베트남 금융산업 개요

(1) 은행업

□ 2013년 기준 베트남 은행권의 총자산은 2,127억 달러이며, 대출액은 1,641억 달러, 수신액은 1,614억 달러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

- 총자산, 대출액, 수신액 증가율이 2000년대 후반까지는 2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당국의 대출 억제정책, 국영기업 앞 대출채권 부실화 대응 등으로 최근에는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표 1> 베트남 은행산업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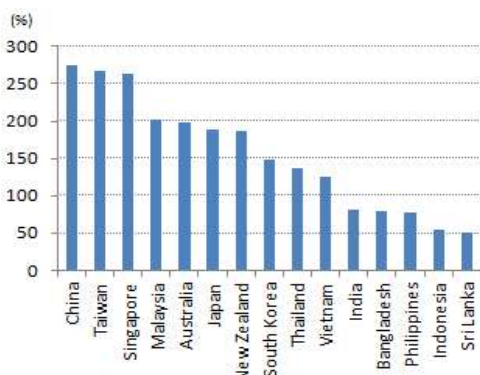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총자산	1,634	1,880	2,127	2,476	2,830
대출액	1,345	1,477	1,641	1,877	2,108
수신액	1,181	1,478	1,614	1,796	1,962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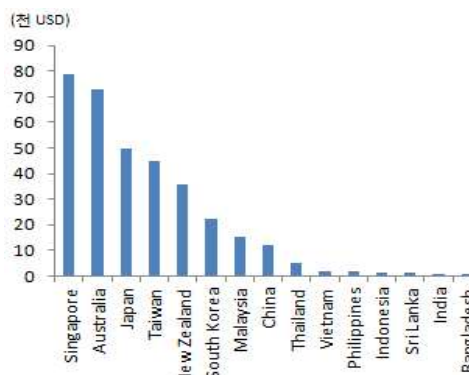
- 2013년 베트남의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125%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접국보다 높으나, 베트남의 1인당 예금액은 1,751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까지 성인의 약 21%(2011년말 기준)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은행산업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GDP 대비 총자산 비교



자료: BMI(2013년 기준).

<그림 2> 1인당 예금액 비교



자료: BMI(2013년 기준).



□ 2014년 8월말 기준, 국영은행 5개, 민영상업은행은 35개, 합작투자은행 4개, 외국계은행* 5개, 외국은행 지점 50개가 베트남에서 영업하고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은행이 많은 편

*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은행

- 국영은행은 5개에 불과하지만 모두 총자산 기준 상위 5위에 포함되었으며 (2013년말 기준), 2014년 7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자산의 48%를 점유하고 있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임.

* 여신전문업체 포함

※ 국내 은행 중 5개(신한, 우리, 외환, 국민, 기업) 은행이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베트남 은행업에 진출하였음.

<표 2> 베트남 5대 상업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은행명	유형	총자산	총예금	ROE	ROA
1	Agribank	국영	29,008	23,247	11.6	0.7
2	Vietinbank	국영	27,188	17,194	14.3	1.3
3	BIDV	국영	25,868	15,986	16.4	1.0
4	Vietcombank	국영	22,123	15,672	13.5	1.2
5	VDB*	국영	13,760	213	3.7	0.2

* Vietnam Development Bank

자료: EIU(2013년 기준).

□ 부동산 시장 침체,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화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

- 2014년 2분기 은행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은 0.30~0.45%, 자기자본 이익률(Return on Equity)은 2.9~4.6%를 기록하였음.

-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에 따르면, 2012~2013년 베트남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4%를 상회하였으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베트남자산운용회사(VAMC) 설립,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3.5~4% 수준으로 하락함.

- 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부실채권 분류 기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강화할 경우 NPL 비율이 세 배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VAMC 역시 자본금이 5조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2) 비은행 여신전문업

□ 베트남의 비은행 여신전문업¹⁾은 파이낸스업과 금융리스업으로 구분

- 파이낸스 업체는 신용기관법에 명시된 파이낸스사의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파이낸스사와 허가된 일부 업무만을 취급하는 특화파이낸스사로 구별됨.

* 기관으로부터의 수신, 회사채, 정기에금증서 및 기타 유가증권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대출, 보증, 할부금융, 신용카드, 팩토링, 금융리스 등

- 종합파이낸스사는 11개가 있는데, 대부분 베트남 정부 또는 국영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가계보다는 국영기업 앞 대출이나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화파이낸스사는 총 6개로 모두 외자계 파이낸스사이며, 소액신용대출, 할부금융 등 소비자금융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Prudential Vietnam Finance를 제외한 5개사는 주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업체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현지법인 형태로 파이낸스업에 진출하였음.

- 금융리스회사는 기계, 설비, 운송수단 등의 리스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며 총 12개가 있음. 외자계 리스회사는 주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설비, 선박, 자동차에 대한 리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금융리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7월말 현재 베트남 여신전문업체의 총자산은 약 80.6조 동(약 38억 달러)로, 금융기관 총자산의 1.3%만을 점유

※ 베트남석유공사(PetroVietnam)의 자회사로 파이낸스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컸던 PetroVietnam Finance와 Western Bank 간 합병으로 민영상업은행인 Vietnam Public Bank이 설립(2013.10월)되면서 여신전문업체의 총자산규모가 급감함.

- 베트남의 소매금융(Retail loan)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신전문업체는 은행 접근이 어렵고 소액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 서민층 고객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1) 베트남의 신용기관법(Credit Institution law)에 따르면, 비은행 여신전문업체는 개인으로부터의 수신이나 고객 계좌를 통한 지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소매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점유율은 97%에 달하며, 외자계 파이낸스사는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o 소비성향이 높은 생산가능인구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등으로 여신전문업체의 주된 업무영역인 소비자금융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Euromonitor는 소매금융시장이 2012년 331조 동에서 연평균 5.7% 가량 증가하여 2017년 437조 동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부실채권 증가로 베트남 여신전문업체의 수익성은 낮은 상황

- o 여신전문업체는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수익성이 저해되어 2014년 1분기 ROA가 0.43%에 그쳤음.

(3) 보험업

□ 2013년 베트남의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²⁾는 45.9조 동 (약 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o 2013년 현재 생명보험 20.1조 동, 손해보험 25.8조 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됨.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부터 생명보험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동차보험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시장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

□ 베트남 보험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대체로 10%를 상회하였으나, 보험 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1.3%, 23.8달러 수준에 불과

- o BMI는 보험상품의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고인플레이션* 경험에 따른 장기 금융상품 회피 성향,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보험침투도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밀도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4~2012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모두 7%를 상회(2009년 제외)하였으며, 2008년에는 23.1%, 2011년에는 18.7%를 기록한 바 있음.

2)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 Written) + 수재보험료(Reinsurance Assumed) - 해약환급금 지급.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재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가 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는 수익을 의미함.



<표 3> 베트남 보험업 시장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생명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6	9	10	11	12
	보험침투도(%)	0.4	0.6	0.6	0.6	0.6
	보험밀도(달러)	6	10	10	11	13
손해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10	11	12	14	16
	보험침투도(%)	0.7	0.7	0.7	0.7	0.7
	보험밀도(달러)	11	12	13	15	17
계	시장규모(억 달러)	15	20	22	25	28
	보험침투도(%)	1.1	1.3	1.3	1.3	1.3
	보험밀도(달러)	17	22	23	26	30

주: 1)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2) 보험침투도: 수입보험료/GDP
 3)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자료: BMI.

□ 2013년말 현재 베트남 보험업에는 29개 손해보험사, 16개 생명보험사, 2개 재보험사, 12개 보험대리업체가 영업중

- 2013년 PVI Sun Life(캐나다 합작사)와 Phu Hung Life(대만 합작사)가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지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6개와 생명보험사 1개 (Baoviet)가 있음.
- 2013년 기준, Prudential(32.5%), Baoviet(27.2%), Manulife(11.3%) 등 3개 업체가 생명보험 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업체의 개별 점유율은 10%를 하회하고 있음.
 - Prudential과 Manulife는 모두 시장개방 초기인 1999년 베트남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64년 설립된 Baoviet은 개방 이전에 보유했던 고객 기반에 힘입어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 국내업체 중 한화생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점유율은 1%대임.
- 2012년 기준, 화재보험시장에서는 Baoviet(23.7%), PVI(20.5%), Bao Minh (10.0%), PJICO(8.7%), PTI(7.2%) 등 상위 5개사가 모두 현지 업체로 구성 되어 있음.
 - ※ 국내업체 중 삼성화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점유율은 3%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됨.



(4) 증권업

□ 베트남 증권시장은 현재 호치민, 하노이 2개 거래소 체제로 운영중

- 2000년 호치민 증권거래센터(현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베트남 증권시장이 형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중소기업의 상장 유도를 위해 상장 요건을 완화한 하노이 증권거래센터(현 하노이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음.
- 2014년 VN 지수(호치민 증권거래소)와 HNX 지수(하노이 증권거래소)는 반중시위 격화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일시적으로 급락하였지만, 경상수지 흑자 전환, 물가상승률 하락, 경제성장세 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4년 8월말 현재 VN 지수와 HNX 지수는 각각 전년말 대비 26%, 28% 상승하여 636.65과 84.04을 기록하였음.

<표 4> 베트남의 거래소별 현황

구 분		호치민 증권거래소	하노이증권거래소
상장종목수		341개	361개
주가지수	2013년말	504.63	67.84
	2014. 8월말	636.65	87.04
시가총액		1,133조 동 (약 535억 달러)	139조 동 (약 66억 달러)

주: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4년 8월말 기준
 자료: 호치민 증권거래소, 하노이 증권거래소.

□ 104개 증권사가 영업 중(2013년말)으로, 시장 규모 대비 증권사가 많은 편

- 베트남 정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세 증권회사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거나 인가 반납을 유도하고 있음.
- ※ 국내 업체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분인수 또는 합작법인 설립의 형태로 베트남 증권업에 진출하였음.

□ 베트남 증권업체의 이익 규모는 구조조정에 힘입어 2011년 1.2억 동적자에서 2012년 1.2조 동, 2013년 2.1조 동(잠정)으로 증가

- 2013년 기준 베트남 증권사 수입원 구조를 살펴보면, 자기자본투자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개(brokerage, 19%), 투자자문(9%)이 그 뒤를 잇고 있음.



II. 금융산업 감독 체계

□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은 SBV 산하기관인 은행감독청 (Banking Supervisory Agency)이 담당

- 은행감독청은 금융정책 기획 업무와 감독 업무 분리를 통한 은행, 여신전문업체 등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 11개 부서로 조직이 확대되었음.
 - 신용기관의 설립, 폐쇄 및 합병에 관한 결정, 신용기관에 대한 조사·검사, 행정감독, 영업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의 현지 신용기관 앞 지분투자, 현지법인·지점·사무소 설립 승인 권한을 보유함.
- 은행업 진출시 검토해야할 주요 법규로는 2010년 개정된 신용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³⁾과 제22호 시행령⁴⁾, 2개의 시행규칙⁵⁾이 있음.
 - 2011년에 새로운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업 진출 인허가 절차, 제출 서류 등 2개의 시행규칙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의 경우 2011년 시행규칙에 따라야 함.
- 여신전문업 진출에 대해서는 신용기관법과 함께 2014년에 신규 제정된 시행령⁶⁾ 및 2개 시행규칙⁷⁾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은행과 여신전문업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신용기관법과 2010년 제정된 시행규칙⁸⁾에 따라 이루어 짐.

□ 재무부는 증권사나 보험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

- 보험감독국(Insurance Supervisory Division)은 보험사, 재무부 산하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련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Law No. 47/2010/QH12

4) Decree No. 22/2006/ND-CP

5) Circular No. 03/2007/TT-NHNN 및 Circular No. 40/2011/TT-NHNN

6) Decree No. 39/2014/ND-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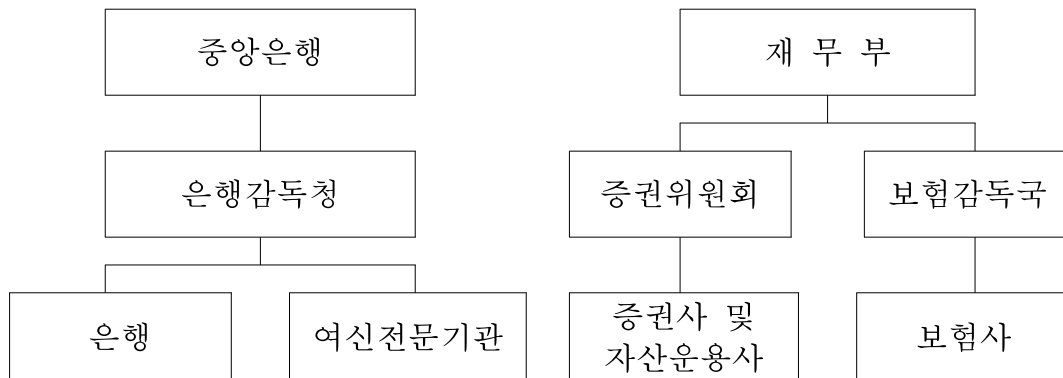
7) Circular No. 40/2007/QD-NHNN 및 Circular No. 01/2008/QD-NHNN

8) Circular No. 13/2010/TT-NHNN



- 2003년 신설된 보험감독국은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업 관련 법률 및 세부 지침 마련, 보험업 정책 수립, 보험사 및 보험대리업체 인가 부여 및 취소,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보험업 진출시 검토해야 할 주요 법규로는 2010년에 일부 개정⁹⁾된 보험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과 제 45·46호 시행령¹⁰⁾, 2개의 시행규칙¹¹⁾이 있음.
- 증권위원회는 1996년 설립되었으며, 증권거래소 등 증권시장 관련 기관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증권사에 대한 인허가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증권업 진출시 검토해야 할 주요 법규로는 2010년 일부 개정¹²⁾된 증권업법(Law on Securities), 제 58호 시행령¹³⁾, 2개의 시행규칙¹⁴⁾이 있음.

<표 5> 베트남의 업종별 금융감독체계도



9) Law No. 61/2010/QH12

10) Decree No.45/2007/ND-CP 및 Decree No. 46/2007/ND-CP

11) Circular No. 124/2012/TT-BTC 및 Circular No. 125/2012/TT-BTC

12) Law No. 62/2010/QH12

13) Decree No. 58/2012/ND-CP

14) Circular No. 210/2012/TT-BTC 및 Circular No. 212/2012/TT-B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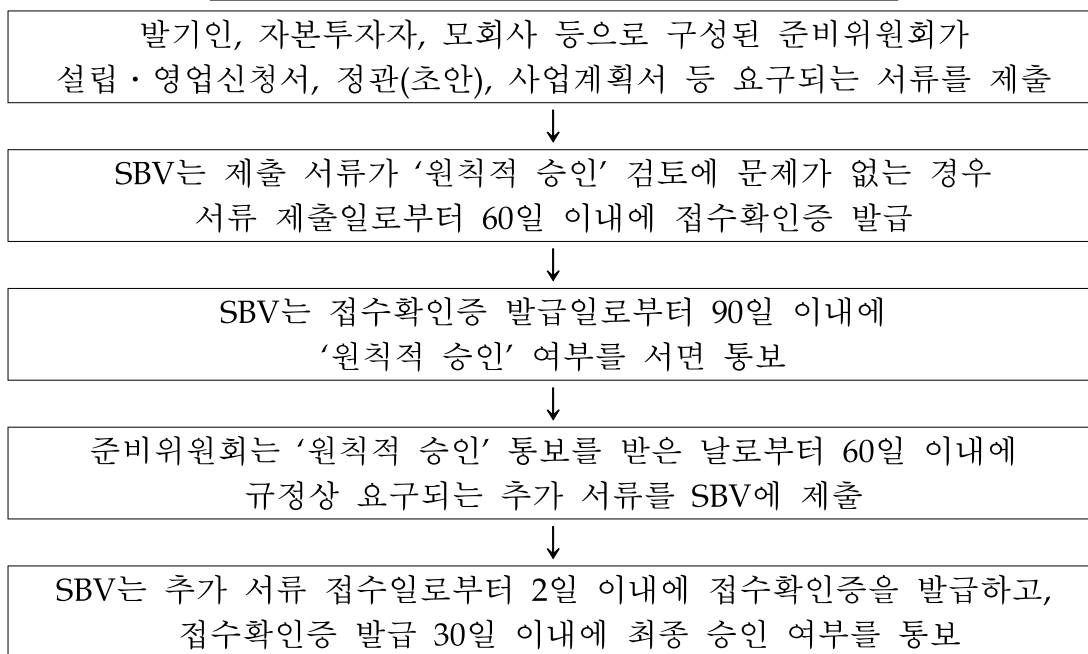


Ⅲ.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1) 은행업

- 2011년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작은행, 외국계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추진시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이 변경¹⁵⁾

<표 6> 외국인의 은행업 진입 인허가 절차도



※ 인허가 과정에서 SBV는 인민위원회, 경제안정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
자료: Circular No. 40/2011/TT-NHNN.

-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 제도를 통해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음.
- 제출 서류는 외국인의 은행업 진입 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투자자의 재무적 능력과 설립될 은행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진입 형태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한편, SBV는 설립 인가시 영업기간과 영업내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영업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SBV가 인가하지 않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금지됨.

15) SBV는 영업기간 연장, 지점위치 변경, 법인형태 변경(합작민영은행↔외국계은행) 등에 작용되는 인허가 절차도 규정에 명시하였으며, 상호, 자본금, 정관 등 중요사항 변경 시 SBV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시장 진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 및 주요 요건을 다루고자 함.



□ 설립 인가 부여시 SBV는 자본금 규모, 신청인¹⁶⁾의 성격 및 재무능력 등을 검토

- 2010년부터 합작은행과 외국계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당초 1조 동에서 국영 상업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3조 동(약 1.4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백만 달러를 상회해야 함.
- 신청인은 본국에서도 은행업¹⁷⁾을 영위하고 베트남에서 취급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SBV의 총자산, 재무능력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가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본국의 은행업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고 국제적 영업활동 경험이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양호하고 위기 상황에도 재무약정을 이행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신청인은 인가신청일 직전년도 기준 자본비율이 양호하고 리스크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본국 감독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 합작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을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타 베트남 금융기관의 소유자, 설립자, 전략적투자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인의 총자산(인가신청일 직전년도말 기준)이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또한, 인가일로부터 5년간 합작사 또는 외국계은행 설립자들이 자본금 전부를 보유해야 함.
 -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는 인가신청일 직전년도말 기준 모회사의 총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진출 형태와 무관히 설립자들의 법적 행위능력과 출자능력 보유, 경영진, 이사 등의 자격 요건 충족, 설립·영업계획 수립 등이 요구됨.
 - 또한, 베트남 금융규정 준수 등에 대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작은행이나 외국계은행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정관이 베트남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SBV와 본국 감독기관 간에 은행업 감독과 관련 정보 교환 등에 대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함¹⁸⁾.

16) 합작은행, 외국계은행 또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17) 베트남 신용기관법은 은행업을 수신, 여신, 결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여신전문업체 설립 시에도 동일한 정의가 적용됨.

18) 2006년 6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베트남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하였음.



□ 외국은행이 추가 지점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점 신설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본점과 기존 지점 모두 요건 충족이 필요

- 기존 지점은 지점 추가 신청 이전 최소 3년간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경영 및 실행 기구, 내부 통제 시스템과 내부 검사를 위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함.
- 외국은행 본점의 경우에는 지점 신설시 인가 요건 충족, 베트남 지점에 대한 약정사항 이행, 본국 금융당국의 추가 지점 설립 허가 등이 요구됨.

□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상업은행 지분인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자자 성격에 따른 지분 보유한도가 적용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은행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분 보유한도가 2014년부터 다소 완화되었으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의 누계는 여전히 30%를 초과할 수 없음.¹⁹⁾
- 외국인 개인 및 외국기관의 지분 보유한도는 각각 5%와 15%이며, 전략적 투자자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됨. 다만, 은행업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총리가 승인한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피인수 베트남 금융기관의 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은행 지분인수 승인 절차는 인수에 따른 지분율 수준에 따라 상이

- 베트남 민영상업은행의 증자나 자사주 매각, 민영상업은행으로의 전환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인수가 허용됨.
- 지분 인수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10%를 상회하는 경우 SBV는 베트남 금융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함.

¹⁹⁾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보유한도, 절차 및 자격 요건은 Decree No. 01/2014/ND-CP에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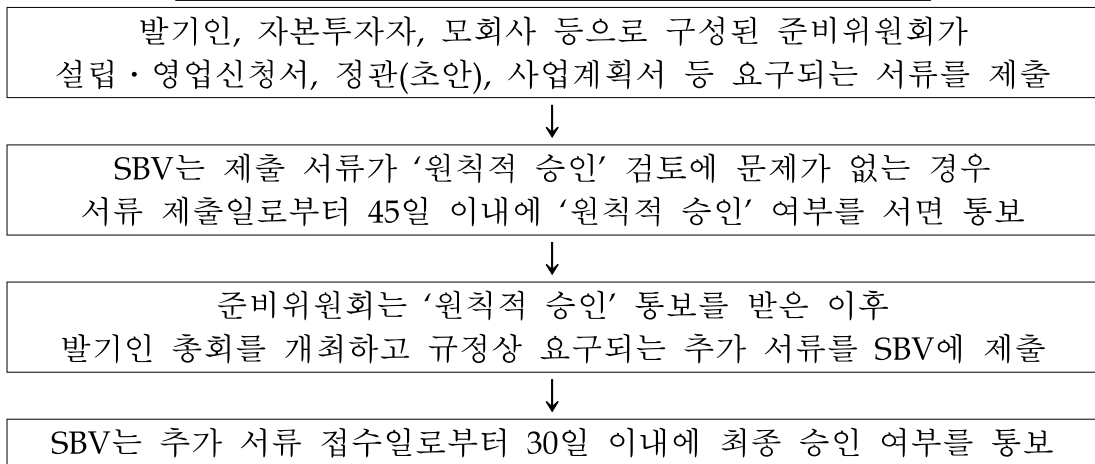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양호한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과 지분 인수능력 보유, 신청일 이전 1년간 본국과 베트남 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례 부재, 자산 요건 충족²⁰⁾ 등이 요구됨.
- 전략적투자자는 자산 요건을 제외한 외국인투자자의 인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업력 5년 이상, 신청일 직전년도 기준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서약서 작성, 타 베트남 금융기관 지분율 10% 미만, 지분 매입 금융기관의 지분 10% 이상 매입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외국 은행으로 제한됨.
- o 지분 인수에 따라 지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SBV가 승인 여부를 결정함.
- o 지분인수로 지분율이 5%를 하회하는 인수건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은행이 비상장사인 경우 SBV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2) 여신전문업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작법인 또는 외국법인(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의 형태로 여신전문업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는 은행과 유사하나 다소 간소화**

<표 7> 외국인의 여신전문업 진입 인허가 절차도



자료: Circular No. 40/2007/QD-NHNN.

²⁰⁾ 신청일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인 경우 총자산이 100억 달러를, 비금융기관인 경우 최소 수권자본금(chater capital)이 10억 달러를 상회해야 함.



- 여신전문업 설립 절차에도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제출 서류 역시 은행과 유사하게 투자자의 재무적 능력이나 설립될 여신전문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진입 형태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SBV는 여신전문업체 설립 인가시 영업기간과 영업내용을 지정할 수 있음. 최대 영업허가기간은 50년으로 은행보다 짧으며 SBV가 인가하지 않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금지됨.

□ 법정자본금 규모 외에는 여신전문업체 설립시에도 신청인²¹⁾의 성격 및 재무능력 등의 요건은 대체로 은행 설립시와 유사

- 파이낸스회사와 금융리스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법정자본금인 5,000억 동(약 24백만 달러)과 1,500억 동(약 7백만 달러)을 상회해야 함.
- 은행과 동일하게 여신전문업체 설립 신청인은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베트남에서 취급할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SBV의 총자산, 재무능력 및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인가신청일 직전년도말 기준 신청인의 총자산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100억 달러를 상회해야 함.
- 또한, 경영진은 법적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학위, 동종업계 근무경력 등 타 규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여신전문업체 설립 필요성, 정관의 준법성, 설립·영업계획의 타당성도 인정되어야 함.
 - 또한, 베트남 금융규정 준수 등에 대한 서면 약정서 작성, SBV와 본국 감독기관 간에 은행업 감독과 관련 정보 교환 등에 대한 협약서 체결 등의 요건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투자자의 여신전문업체 지분 보유한도는 은행의 경우와 동일하나 최대 외국인투자자 지분을 누계는 은행과 달리 49%까지 허용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인수는 은행과 동일하게 베트남 민영여신전문업체의 증자, 자사주 매각 또는 민영여신전문업체로 전환시 가능하며, 승인 절차도 은행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외국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여신전문업체도 여신전문업체에 대한 전략적투자자가 될 수 있음.

21) 여신전문업체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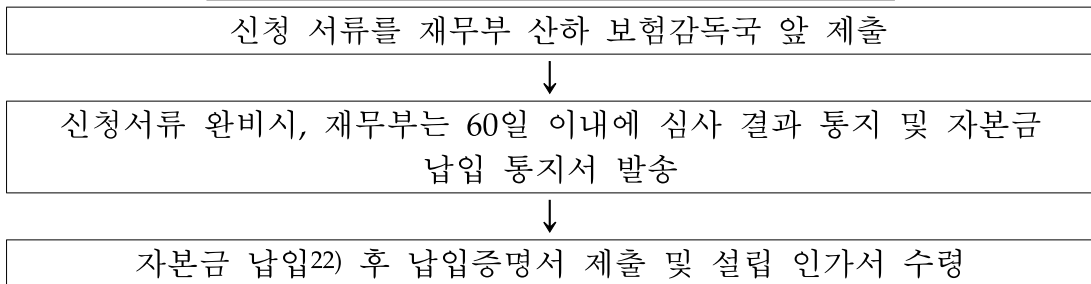


(3) 보험업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 통과 필요

* 합작법인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보험사

<표 8> 외국인의 보험업 진입 인허가 절차도



자료: Circular No. 124/2012/TT-BTC.

- 신청서류 미비시 보험감독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회사 앞 서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신청회사는 보험감독국 요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는 주로 설립 목적, 회사소개, 개괄적인 사업계획내용 및 판매 상품, 예상자본금 등과 관련됨.

□ 베트남 내에 현지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는 외국인에게는 자본금 규모, 재무능력 등의 요건 충족 요구

- 현지법인은 정관상 설립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생명보험 6,000억 동, 손해보험 3,000억 동) 이상이어야 하며, 개설 영업점 수나 업무영역에 따라 추가 자본금 납입이 요구됨.

<표 9> 업종별 적용 법정자본금 현황

(단위: 억 동)

분 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최저 법정자본금		6,000	3,000
추가 납입 요구액	영업점 수 추가	100*	좌동
	업무영역 확대	2,000(변액) 3,000(연금)	500(항공) 500(인공위성)

* 21번째 영업점부터 각각 추가 자본금 납입

자료: Circular No. 125/2012/TT-BTC.

2) 자본금 납입 계좌는 베트남 현지에서 설립 및 운영 중인 은행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개설해야 함.



- 최저 법정자본금만을 납입한 경우 최대 20개 지점 및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영업점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개별 지점 및 사무소 당 100억 동의를 자본을 추가로 납입해야 함.
- 최저 법정자본금만을 납입한 경우 일부 업무영역* 진출에 제한이 있음. 생명보험사는 각각 2,000억 동(변액보험업), 3,000억 동(연금보험업)의 추가 자본금 납입을 통해 제한 업무 영역에 진출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항공 및 인공위성 업무영역 진출을 위해 각각 500억 동을 납입해야 함.
 - * 생명보험사는 변액 보험과 연금 보험, 손해보험사는 항공 보험과 인공위성 보험에 대한 진출 제한
- o 본사가 최소 10년 이상 적법하게 운영되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본국에서 보험법령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함. 또한 본사 총자산이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외국자본이 베트남 보험사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지분율, 피인수기업의 종류, 인수자의 성격 등에 따른 지분한도 규정이 적용

- o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o 피인수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 외국자본은 피인수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으나, 피인수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인수자의 성격에 따라 취득 가능 지분율이 달라짐.
 - 외국인 개인과 기관의 최대 지분율은 각각 10%와 20%가 적용됨.
 -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피인수회사의 최소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지분을 납입하거나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등에 한해 동 투자자는 피인수 주식회사의 지분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음.

□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보험대리인을 통해 베트남 내 보험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

- o 보험대리인은 생명·손해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15% 이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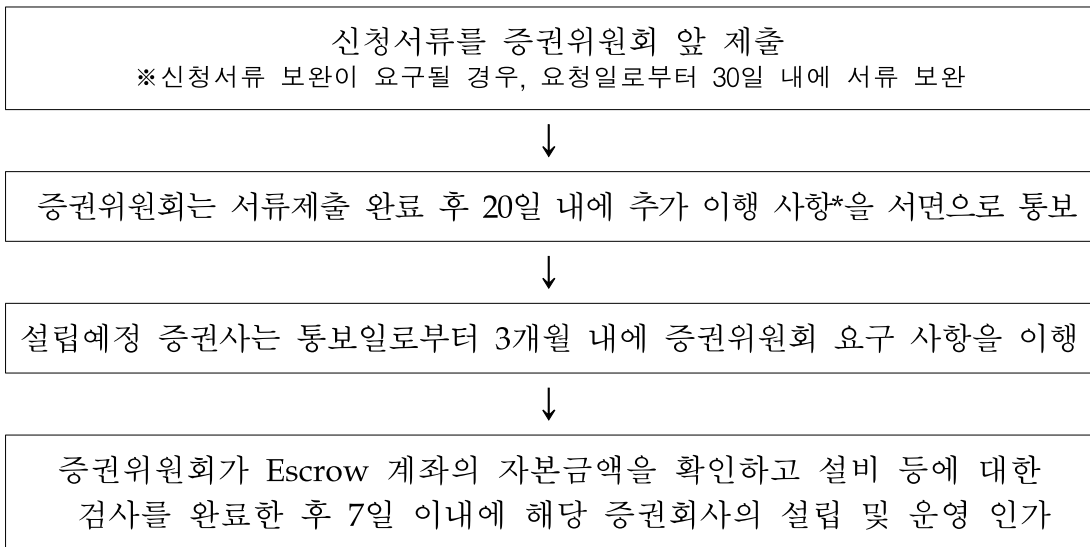


(4) 증권업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가 적용

* 합작법인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증권사

<표 10> 외국인의 증권업 진입 인허가 절차도



* 영업상 필요한 설비투자의 완비, 증권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Escrow 계좌 앞 법정자본금 입금 및 동결

자료: Decree No. 58/2012/ND-CP.

□ 베트남 내에 현지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는 외국인에게는 기본자격 요건, 업무별 법정자본금 규모 등의 충족 필요

- 자본금을 개인이 납부할 경우 개인이 충분한 재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기관이 자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합병, 분할, 파산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이익이 발생하여야 함.
- 업무 부문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상이하며 각각의 업무에 대한 법정자본금을 납부할 경우 복수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또한, 자본금 납입 시 해당 자금의 적법성 여부를 독립회계기관을 통해 확인해야함.



<표 11> 업종별 적용 법정자본금 현황

(단위: 억 동)

분 류	금 액
위탁매매, 외국계 투자운용사	250
자기매매	1,000
인수	1,650
투자자문	100

자료: Decree No. 58/2012/ND-CP.

□ 외국자본의 베트남 증권사 지분 100% 인수도 허용

- 외국자본이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자본의 49% 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해당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 경험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100% 인수가 허용됨.



IV.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1) 은행업

□ 포트폴리오 집중 방지를 위해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

- 2010년 개정된 금융기관법에 따르면, 동일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²³⁾의 15%, 25%로 설정되어 있음.
- 해당 은행의 자회사인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이며, 모든 자회사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본금의 20%로 설정됨.
 - 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사가 있는 경우 동 리스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한도는 자본금의 5%로 제한됨.
 - 해당 은행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업체에 대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 투자 또는 거래를 위한 무담보 대출도 취급할 수 없음.
- 다만, 정부, 기관, 개인 등의 위탁자산을 활용한 대출, 베트남 정부 앞 대출 등 일부 신용공여 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²⁴⁾도 있음.

□ 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종 유동성비율 및 자본 적정비율(CAR) 등을 규제

- 은행의 유동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7영업일 이내 지급도래 부채 대비 7영업일 이내 환가가능자산 비율은 100%를 상회해야 함.
-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은행의 자본적정비율(CAR)은 최소 9%를 유지하여야 함.

□ 신용공여 한도, 건전성 관련 비율 규제 이외에도 이익 적립을 의무화하고 지분투자도 대상·규모 등을 제한

- 유보금이 자본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해야 하며, 유보금을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없음.

23)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함.

24)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타 신용기관에 대한 만기 1년 미만의 대출 및 보증, 베트남 정부 또는 OECD 회원국의 국제 담보부 대출 및 보증, 신용기관에 예치된 현금예금 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전액이 담보되는 대출 및 보증, 기타 정부에 의해 결정 또는 사전 승인된 한도 초과 여신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은행(자회사 포함)이 특정 업체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해당 은행의 지분율은 11%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은행의 총출자액(자회사 포함)은 해당 은행의 자본금과 유보금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은행 지점은 출자 또는 지분인수 주체가 될 수 없음.

(2) 여신전문업

□ 신용공여 한도와 지분투자 한도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 여신전문업의 경우 동일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한도는 각각 자본금의 25%와 50%임.
- 파이낸스 업체(자회사 포함)가 특정 업체에 출자하거나 지분 인수시 파이낸스 업체의 지분율 한도는 은행과 동일하게 11%가 적용되지만 파이낸스 업체의 총출자한도는 자본금과 유보금 총액의 60%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금융리스업체의 출자 및 지분인수는 허용되지 않음.

(3) 보험업

□ 베트남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능력 및 예치금 관련 규정을 시행중

- 손해보험사는 보유보험료(Retained Premium)²⁵⁾의 25%와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의 12.5%를 상회하는 지급여력을 유지해야 함.
- 생명보험사는 지급능력 유지를 위해 유동자산(Liquid Asset)이 책임준비금(Insurance Reserve)²⁶⁾의 4%를 상회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가액의 0.1% 이상, 5년 초과인 보험은 보험가액의 0.3%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함.
- 보험사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정자본금의 2%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예치금은 보험사의 지급능력이 악화될 경우 사용되며 90일 이내에 사용된 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5) 보유보험료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료(출재보험료+해약환급금 환입). 출재보험료는 보험사가 위험을 타 보험사에 전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를 의미함.

26) 향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청구 등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적립하는 금액



□ 책임준비금 중 여유자금 투자시 투자 상품별 투자 한도 준수 필요

- 주식매입, 회사채(미보증), 자본출자 등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여유자금의 35%(손해보험사), 50%(생명보험사)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부동산 투자 및 대출도 여유자금의 최대 20%(손해보험사), 40%(생명보험사)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지 않은 정부채, 회사채(보증), 예금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음.

(4) 증권업

□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무비율, 유동자본비율 (Liquid Capital Ratio)²⁷⁾ 등을 규제

- 총부채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총부채 대비 유동자본 비율은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또한, 단기부채는 단기자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정자산투자는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동자본비율에 따라 의무보고 횟수가 달라짐. 유동자본비율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월별 보고²⁸⁾가 의무이지만 180% 이하인 경우에 월 2회, 1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주, 120% 이하인 경우에는 매일 보고해야 함.

□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직접투자 시에는 투자대상별로 상이한 구도 적용

- 상장사 유동주식²⁹⁾의 20% 이상을 매수할 수 없으며 비상장유한회사 유동주식의 경우 15% 이상을 매수할 수 없음.
- 증권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금지되며 동일회사에 대한 투자는 증권회사 총자산의 20% 미만으로 제한함.

27) Circular No. 165 (Appendix5)에 따라 정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함.

28) 유동자본비율 및 산출과정, 위험도 측정(시장·지급·운영 위험) 자료

29) 발행주식에서 최대주주 지분 등 유통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한 실제 투자가능한 주식을 의미함.



V.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기반 현지화가 필요

- 생명보험업을 제외하면 베트남 현지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금융수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중장기적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 기반의 현지화가 필수적임.
- 베트남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국, 제16위 수입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총교역규모의 2.6%인 28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액 중 자본재 비중이 2013년 이후 50%를 상회하고 있어 무역금융이나 해상보험, 금융리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2014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금액 누계는 총해외투자액의 3.9%인 105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의 금융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구매력이 높은 신흥고소득층(vinavalet)이 최근 대두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2009년 17백만 명에서 2020년 56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현지 고객층을 확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TPP 등 역내외 경제통합 적극 참여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약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HSBC, ANZ, Hong Leong 은행(말레이시아계) 등 베트남에 기진출한 해외은행들은 최근 주택구입대출이나 개인대출 등으로 취급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낮은 소득수준, 높은 경쟁강도 등을 감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인 진출 전략이 타당

- 베트남의 낮은 소득수준, 높은 경쟁강도 등을 감안하면, 현지법인, 지점과 같은 별도 영업점 설립 형태의 현지 진출을 추진할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범위, 영업망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시장 규모에 비해 영업 중인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많으며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도 지속되고 있음. 또한, 2015년 AEC 설립이 완료될 경우 아세안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역내국 중 금융산업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금융기관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등으로 소비자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신전문업에 대한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베트남 현지은행인 HDBank는 외국계 파이낸스사로 소비자금융시장 점유율이 3위에 해당되는 Societe Generale Viet Finance (SGVF)를 인수함.(2013. 8월)
-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에 최초로 2천 달러를 돌파하여 2019년에는 약 2,800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60%, 태국의 40% 수준에 불과함.
- 지점 또는 금융리스업체는 지분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M&A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진출시 유의해야 하며, 보험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 없이도 현지 대리업체를 통해 영업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대리업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음.

□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라 지분투자형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 베트남 금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은행과 여신전문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을 규제도 다소 완화되어 지분투자 형태의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 외국인지분율 누계 한도 유지, 지분인수시 피인수기관 경영참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등 업종별로 제약요인이 남아있으나,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표방하는 TPP 협상 결과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베트남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분인수시 피인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을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임.



※ 특히 일본 은행은 베트남 은행산업 구조조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지은행 지분투자에 나서, Mizuho의 VietcomBank 지분 15% 인수(2011년, 약 5.7억 달러), BTMU의 VietinBank 지분 20% 인수(2012년, 약 7억 달러)를 성사시켰음.

□ 부실채권 관리, 규제 등에 상존한 리스크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수

- 다만, 베트남의 신용관리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실채권 관리가 어렵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묵시적 차별이 아직 남아있으며, 감독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여신전문업 진출 인허가에 있어 외국자본이 종합파이낸스사 설립 인가를 받은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임.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임영석(02-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사역 유재준 (02-6255-5705)
jjyu@koreaexim.go.kr



< 참 고 문 헌 >

- 권우영, "베트남 여신전문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금융경제분석 글로벌 연구 2013-0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6.
- 금융감독원,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13. 7.
- 금융투자협회, 베트남 금융산업과 금융시장현황, 2011. 4.
- 손승호, "베트남 은행 산업 현황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 8.
- 하나금융연구원, "베트남, 시중은행 외국인 취득한도 상향", 금융경영브리프, 제4권 4호, 2014. 1.
- Allens, *Client update: New Rules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ese Credit Institutions*, 2014. 1.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Vietnam Commercial Banking*, 2014. 5.
_____, *Vietnam Insurance Report*, 2014. 5.
- Daisaku Kadomae, "Vietnam's Retail Financial Business Has Growth Potential", *Nomura Institute of Capital markets Research*, Vol.3, No.4, 2012. 3.
- Deloitte, *Growth Opportunities for Financial Services in Vietnam*, 2014. 9.
- Frasers Law Company, *Vietnam Insurance Law Update*, 2013. 1.
- Hogan Lovells, *Jurisdiction Update: Vietnam's Insurance Market*, 2013. 3
- KPMG, *Vietnam Banking Survey*, 2013. 7.
- Mayer Brown JSM, *Regulations on Licens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mmercial Banks*, 2012. 6.
_____, *Vietnam Loosens Foreign Ownership Limits in Local Banks*, 2014. 1.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inancial Services(Vietnam)*, 2014. 6.
- VPBank Securities, *Vietnam Insurance Industry*, 2014. 5.
-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www.ssc.gov.vn/ubck/faces/en/enmenu/enpages_home)
- 법무부 법규 포탈(<http://vbqpl.moj.gov.vn/vbpq/en/pages/vbpq.aspx>)
- 베트남 재무부(<http://www.mof.gov.vn>)
- 베트남 중앙은행(<http://www.spv.gov.vn>)